
한-미 FTA 섬유산업 설명자료

2011. 8.

**한국섬유산업연합회
FTA 지원센터**

I

한-미 섬유산업 교역현황

□ 섬유산업 현황

- 섬유산업은 전후방 파급효과가 높은 우리나라 주요 고용산업으로 생산, 고용, 업체수 비중이 높은 핵심 기간산업
- 업체수의 10.2%, 고용의 7.0%, 출하액의 3.3%를 차지

<섬유산업 일반 현황('10년)>

구 분	업체수 (개사)	고용 (천명)	출하액 (10억원)	부가가치 (10억원)	수출 (억불)
제조업	57,996	2,452	1,122,987	374,501	4,664
섬 유 (비중%)	5,032 (10.2)	173 (7.0)	37,602 (3.3)	15,031 (4.0)	139 (3.0)

* 자료 : 통계청(광업제조업통계조사보고서, 10인이상 기준, 2009년도 기준), 한국 무역협회 통계자료(2010년 기준)

- '10년 기준 한국의 對미 섬유산업 수출은 12.2억불, 수입은 3.6억불로 8.5억불 흑자 기록

< 대미 섬유수출 추이 >

구 분	'89	'90	'95	'00	'07	'08	'09	'10
대미수출(백만불)	4,312	3,965	2,740	3,648	1,729	1,506	1,108	1,218
증감율(%)	8.6	△8.2	△12.5	8.0	△13.3	△12.9	△26.5	10.0

* 자료 : KOTIS, MTI 섬유(4) 기준

※ '89년 43.2억불 수출의 28% 수준까지 감소

- '05년 섬유쿼터제 폐지이후 중국(19.8%), 터키(6.4%), 인도(3.9%) 등과의 경쟁심화로 시장점유율은 지속 감소

< 미국 섬유시장 한국점유추이 >

(단위 : 백만 미불)

구 분	'06년	'07	'08	'09	'10
대한국 수입	1,666	1,325	1,120	806	857
비중(%)	1.8	1.4	1.2	1.0	0.9

* 자료 : 미국 상무부

II

한-미 FTA 섬유분야 주요내용

- **[양허]** 미국의 섬유품목은 고관세 적용대상으로 평균 13.1%, 최대 32%에 이르고 있음
- 수입액 기준 61%, 품목수 기준 87%의 미국측 관세를 즉시 철폐하여 우리측 주요 관심품목의 시장접근 개선

< 양국 양허 수준 개요 >

구 분		즉시	3년	5년	10년
수입액	한 국	72.0	13.4	14.6	0
	미 국	61.2	0	18.6	20.2
품목수	한 국	97.6	0.5	1.9	0
	미 국	86.8	0	9.3	3.9

- 화섬스웨터·남성셔츠·모직물·면양말·화섬단섬유 등 즉시철폐, 면직물·면셔츠·화섬편물 블라우스(관세율 6.0~32.0%), 화섬편물(탄성사 함유)·PEF직물(관세율 6.0~32.0%) 등은 5/10년 철폐(매년 10/20%씩 관세율 인하)

< 대미 주요수출품목의 관세철폐일정 >

즉시철폐 (품목, 수출, 관세율)	5년철폐 (품목, 수출, 관세율)	10년철폐 (품목, 수출, 관세율)
·인조스웨터: 277(32.0%) ·PE단섬유 : 140(4.3%) ·남성합섬셔츠: 134(25.9%) ·면양말: 134(13.5%) ·합섬모포: 36(8.5%) ·남성모직정장: 25(27.3-17.5%)	·남성면셔츠: 67(19.7%) ·PEF직물: 61(14.9%) ·화섬양말: 59(14.6%) ·면직물: 54(6.0%) ·화섬편물(염색): 38(10.0%) ·합섬편물블라우스: 17(32.0%)	·화섬편물(탄성사 함유 등): 141(12.3-10.0%) ·PE강력사: 53(8.8%) ·PEF직물(염색): 24(14.9%) ·남성면셔츠(편물): 25(16.6%) ·여성면바지(직물): 25(16.6%)

* 수출은 미국수입통계 기준(백만불, '03-05년 평균)

- **[원산지]** 국산원사 사용 촉진효과 등을 고려하여 원사기준(yarn-forward rule*)을 원칙으로 하되, 특혜관세 수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상당 수준의 예외 확보

* 협정 당사국산 '실'을 사용하여 직물을 제직(또는 편직)하고 직물 및 의류 등 섬유 완제품을 재단·봉제하여야만 동 제품의 원산지를 인정하는 제도

- 가방 · 린넨직물 · 여성자켓 · 남성셔츠 등의 **제품에 대해 단일실질 변경기준**(역외산 직물을 역내 재단 및 봉제) 적용
- 아크릴 및 재생섬유, 재생필라멘트사(스웨터, 양말, 안감직물 등에 소요) 역외조달 허용
- 역내 **공급부족 원료**를 사용한 수출제품(직물 · 의류 2억㎡)에 대해 **특혜쿼터 도입**



□ **[세관협력]**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3국 제품이 역내산으로 둔갑하여 우회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세관협력에 합의

* 행정당국의 부담이 증가하지만, 중국산 우회수출을 방지하여 우리 상품의 이미지 저하 및 선량한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는 효과

- 우회수출 방지를 위하여 **대미수출품 생산 관련기업에** 한하여 원산지 입증에 필요한 정보*를 연례 제공 (대한민국 정부→미국정부)

* 소유경영진 명단, 근로자수, 기계대수 및 가동시간, 제품명세 및 생산능력, 납품기업 명단, 미국바이어 연락처 등을 제공

- 다만, 제공할 정보를 작성하는 것이 **기업에 부담**이 될 수 있는 바, 지경부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**실태조사**를 추진하고, 미국에 제공할 자료를 **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예정**

- 아울러 미국에 기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통관보류 가능성을 낮추는 등 **신속통관**을 제고할 수 있도록 양국세관 협력네트워크 구축할 계획

III

한-미 FTA의 섬유산업 기대효과

□ 가격경쟁력 제고로 수출증가 기대

- 섬유분야 평균 13.1%(최대 32%) 관세 폐지시, 주요 경쟁국인 일본, 캐나다, 대만, 중국, 멕시코산 등에 비해 가격경쟁력 개선으로 대미 수출증대 전망
 - * 미국은 섬유제품에 대해 전산업 평균 1.5%에 비해 10배 이상의 고관세 부과
- 또한, 미국산 섬유소재를 사용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도 세계시장에서 수출경쟁력 상승

※ 한-미 FTA 체결시 고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대미 섬유 수출은 연간 약 2억불 증가 (산업연구원 분석, '07.4)

□ 생산증대 및 고용창출

- 관세 철폐에 따른 수출 증가, 생산성 향상 등으로 향후 15년간 연 평균 4,846억원의 생산증대 효과 예상
- 한미 FTA를 계기로 신규투자, 고부가 섬유개발, 브랜드력 향상 등으로 신규 인력 및 고급인력 일자리 창출이 가능

* 도레이 새한(일본)은 한미 FTA를 대비 600억원을 투자, 2013년 탄소섬유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며, 2022년까지 1조 3천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

** 한미, 한EU FTA를 겨냥, 최근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의 한국 리턴 검토 증가

□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상생

- 한국은 섬유 쉼스트림을 보유하고 있으나, 대중소기업간 협업 및 연계가 부족하여 국내 부가가치를 극대화하지 못하는 상태
- FTA 발효로 제3국에서 조달하던 원자재를 국산으로 전환 및 고부가 가치 제품개발을 통한 시장확대가능

<별첨>

<한국의 對米 섬유 수출입 현황>

(단위 : 백만불)

구분	2006	2007	2008	2009	2010
對米 수출	1,995	1,729	1,506	1,108	1,218
증감율(%)	-14.2	-13.3	-12.9	-26.5	10.0
對米 수입	219	248	262	227	365
증감율(%)	-7.4	13.1	5.6	-13.4	60.7
무역 수지	1,776	1,481	1,244	881	853

<한-미 섬유류 품목별 수출입 현황('10년 기준)>

(단위 : 백만불, %)

	수 출		수 입		무역수지
	금액	비중	금액	비중	금액
섬유원료	143	11.7	56	15.3	87
원 사	124	10.2	86	23.6	38
직 물	589	48.4	50	13.7	539
섬유제품	362	29.7	173	47.4	189
합 계	1,218	100.0	365	100.0	853

<미국의 국별 섬유류 수입액>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순위	수입국명	2009년		2010년		
		수입액	증감율	수입액	증감율	점유율
	수입액 전체	81,005.6	-13.1	93,278.8	15.2	100.0
1	중 국	31,759.9	-2.8	38,469.6	21.1	41.2
2	베트남	5,331.5	-1.7	6,288.9	18.0	6.7
3	인도	4,600.3	-9.4	5,375.2	16.8	5.8
4	인도네시아	4,021.1	-5.2	4,654.4	15.7	5.0
4	멕시코	4,142.2	-16.4	4,447.7	7.4	4.8
6	방글라데시	3,522.8	-0.4	4,063.4	15.3	4.4
7	파키스탄	2,750.3	-10.6	3,063.9	11.4	3.3
8	온두라스	2,039.3	-21.9	2,420.9	18.7	2.6
9	캄보디아	1,887.8	-20.9	2,243.5	18.8	2.4
20	한 국	805.8	-28.0	857.2	6.4	0.9